

충청북도세조례개정조례(안)

1. 제 출 자 : 충청북도지사

2.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

가. 제출일자 : 1991년 12월 21일

나. 회부일자 : 1991년 12월 23일

3. 제안이유

- 지방세법의 개정(법률 제4415호, 1991. 12. 14)으로 불일치한 내용수정
- 법령상 조례의 규정이 불필요하거나 중복되는 규정 배제
- 세목의 신설 및 세목조정에 따른 부과·징수 규정 마련

4. 주요골자

- 지역개발세 신설 및 현행 시·군세인 소방공동시설세가 도세로 조정됨에 따른 부과·징수에 관한 조항을 신설
- 법령에서 위임한 세율을 규정

5. 검토의견

○ 지방세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정료자 하한 총합복도도세조
때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

○ 1991년 12월 14일 개정공포된 지방세법(법률 제4415호)의 의하여 조례
를 개정하되 크게 나누어 보면

첫째, 법령의 내용과 일치되지 않은 불합리한 내용을 수정하고

둘째, 조례에서의 규정이 불필요하거나 법령의 내용과 상충이 되는 조항을
삭제

셋째, 새로운 신설되는 지역개발세와 시·군의 목적세에서 도의 목적세로
변경되는 소방광동시설세의 부과·징수 규정을 마련하거 등 전면 개
정하거 것으로

○ 그 내용은 기존의 세목 영역서 법령과 상충되어 있던 조항을 삭제 하였
는바

• 먼저 취득세 규정에서

제17조(납세의무자), 제22조(세율), 제23조(세율적용), 제24조(납기)등
4개조문과 사치성재산의 범위에 대한 규정을 삭제하고

• 동북세역서간

제28조(납세의무자), 제31조(과세표준), 제32조(세율) 등 3개조문

• 면회세역서간

제34조(납세의무자), 제36조(과세표준 및 세율) 등 2개조문을 삭제하였음

- 광면 도의 목적세로 된 소방공병시설세간 제27조(납세의무자), 제28조(부과지역의 고시), 제29조(비과세 및 감면적용자의 신고사항), 제30조(공용, 공익사업용 등의 폐지신고 및 봉지), 제31조(납세관리인의 지정 신고), 제32조(공공시설세의 현황부과), 제33조(납세고지 및 부과징수), 제34조(건축물에 대한 신고의무), 제35조(선박에 관한 신고의무), 제36조(신고의무 및 적권동재) 등 10개 조문을 신설하였고

- 신설된 지역개발세간 제1관, 제2관, 제3관으로 나누어

제1관 발전용수권역서간

제37조(납세의무자), 제38조(비과세, 감면적용자의 신고사항), 제39조(과세표준 및 세율), 제40조(부과대상지역)에 관한 규정을

제2관 지하수권역서간

제41조(정의), 제42조(납세의무자), 제43조(과세표준및세율), 제44조(부

과징수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제3관 지하자원에 관하여는

제45조(납세의무자), 제46조(과세표준및세율), 제47조(부과대상지역)

등 부과·징수에관한규정 11개조문을 신설하므로써

- 다만 지방세법개정과 관련하여 자치단체에서 지방세 부과·징수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충청북도세조례를 개정하는 것이므로 공평·합리세정의 기반위에서 지방자주재원의 확보와 원활한 세징업무 추진을 할 수 있도록 충청북도세조례를 개정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이상 충청북도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 위원장 김연권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세요
- 전문위원 민귀식 충청북도세조례 개정안 검토보고를 봐주시기 바랍니다.